

2020년도 제2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9. 14.(월요일)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4건(안건번호 제2020-116670호~제2020-11673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16670호~116739호{‘■■■■■’ 사이트의 ‘(음악)눈누난나 (NUNU NANA) (가수: 제시 (Jessi))’ 등 84건의 게시물}은 불법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116670호~116739호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단, 기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의견임.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16670호~116739호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금번 심의 안전들은 모두 음악 콘텐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에는 (음악) 오래된 노래 (가수 : 스탠딩 에그) , (음악) LINDA (Feat, 윤미래) (가수 : 린다G)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불법 복제 전송되는 음악 콘텐츠들이 권리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불이익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보고 의견과 마찬가지로 모두 시정조치 권고의 가결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0년 제20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9. 14.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